

科學院歷史研究所 編

朝鮮封建末期經濟史資料集 第一

科學院歷史研究所 編

朝鮮封建末期經濟史資料集 第一

科學院出版社

조선 봉건 알기 경제사 자료집 (1)

1961년 11월 1일 인쇄

1961년 11월 15일 발행

편집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역사 연구소 고대 및 중세사연구실

발행자 과학원 출판사

인쇄소 보통 신문 출판 인쇄소

7-30547

값 10 원

발행 부수 1000 부

서 문

우리 나라 통전 제도 태내에서 자본주의적 요소의 발생 발전에 관한 문제는 우리 력사 학계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에서 부르주아 민족 형성에 관한 문제 및 근대사 시기 구분에 관한 문제 등 력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관건으로 된다.

우리의 력사 학자들은 일찍부터 이 문제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아직도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중요한 파제의 하나로 남아 있다. 편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기를 좀 소급하여 해당한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풍부한 사료의 토대 위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본 자료집 편찬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매개 나라에서 자본주의 발생은 소여 국가 봉건 말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제련화와 관련되는 만치 본 자료집 수집 범위도 우리 나라 봉건 말기에 봉건적 태내에서 발생한 경제적 제련화 전환을 포괄하는 방향에서 노력하였다.

본 자료집 제 一 에서는 편의상 우선 一六五〇년(효종 원년)으로부터 一八〇〇년(정조 二四년)에 이르는 관계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본 자료집에서는 一五一年간에 발생한 주요한 경제적 사변들과 제반 경제적 현상들에 관한 자료를 광범히 망라하였다. 그것은 一八세기 후반기 이후 봉건 경제 체내에서 발생한 제반 경제적 변화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자료집 제 一항 수공업에 관한 자료에 있어서는 봉건적 수공업 조직이 해이된 후 수공업자들의 활기 있는 진출 동등을 보여 주는 자료들이 수록되었다.

광산업에 관한 자료에 있어서는 바로 이 부문(광산업 부문)에서 발생한 고용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정조(正祖)에 대한 응지 상소문(應旨上疏文)에서 한 우정규(禹鼎圭)의 말이 그 사실을 전해 주고 있다.

어업, 염업, 선업에 관한 자료에 있어서는 균역법(一七五〇年) 실시 이후에 어업과 염업과 선업들이 종전에 비하여 대단히 쇠퇴된듯이 말하는 봉건 집권자들의 말과는 반대로 이것들이 적지 않게 활기를 띠어 간 사실을 말해 주는 자료들이 수록되었는바 봉건 지배층들이 어, 염, 선업이 쇠퇴하였다고 거듭 말한 것은 어, 염, 선업자들의 탈세 행동으로 인하여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의 국가 수입 그 자체가 쇠퇴된 것으로 보여진 것 같다.

제 二항 농업에 관한 부문에서는 토지 소유 관계에서 발생한 제 변화 특히 탈세전의 증대와 실결의 축소 경향 및 매매와 저당의 성행으로 인한 토지의 상품화 과정에 관한 자료들이 수록되었다.

량자의 전란(임진, 병자) 후 급격히 증대된 궁방전(宮房田) 아문 무전(衙門屯田) 등은 그 대부분이 민전(民田)을 집탈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 준다. 무토(無土), 유토(有土)의 두 가지 형태의 궁방전 및 각 아문 둔전들에서 진행되는 가혹한 착취 현상에 관한 자료도 수록되었다.

판매 시설 및 농업 기술에 관한 자료에 있어서는 一七세기 중엽 이후 판매 수리 시설의 개수 확장에 관한 자료들이 수록되었으며 농작물 경종법 변화 담배를 비롯한 공예 작물 재배의 보급에 관한 약간의 자료들도 수록하였다.

제三항 상업에 관한 항목에서는 국내 상업과 해외 무역을 구분하여 자료를 수록하였다.

一七—一九세기는 리조 봉건 사회에서 상업이 활기를 띠이기로서 특정 지어진 다. 국내 상업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 나라 중세기의 봉건적 농업 조합 형태의 하나인 시전(市廛)이 판전(亂廛)의 격증으로 인하여 붕괴 해체되어 간 일련의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리조 후반기 국내 상업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강상(江商)들과 서울 부상(富商)들에 관한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 조운 체계에 깊이 침투하여 三남 세미의 적지 않은 땅을 매년 청부 수송한 소위 경강선작대(京江船作隊)에 관한 자료, 그들에 의하여 진행된 대규모의 세미 박남에 관한 자료, 二〇만 서울 인구의 식량 보급의 명맥을 장악한 데미곡상으로서의 강상들에 관한 자료들이 주요하게 수록되었다.

그 밖에도 조세 청부업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국내 경제 생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던 어용상인 집단의 다른 하나인 정주인(京主人), 영주인(營主人)에 관한 약간의 자료도 수록하였다.

또 향시(鄕市)에 관한 약간의 자료들과 강계와 강원도, 경상도 등지의 산삼(山蔘) 매매에 종사한 어용상인의 반 집단인 삼상(蔘商)들에 관한 자료들도 수록하였다.

국내 상업의 『기라』항에서는 참고 삼아 목가(穀價)를 위시한 이 서거의 각종 물가 및 도량형(度量衡)에 관한 약간의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대의 무역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우선 一一七—一九 세기의 라조 봉건 정세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 대청 무역 특히 채문후지(柵門後市)에 관한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연행 팔포(燕行八包), 세폐(歲幣), 방물(方物) 등에 관한 제반 자료들은 이 시기 대청 무역이 얼마나 큰 규모로 진행되었던가를 역력히 보여 주고 있다. 수백 년간에 걸친 대청 무역 과정에서 당시의 우리 나라에서는 연상(燕商)으로 불리워지는 외국 무역상의 집단이 더욱 공고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였는바 그들이 바로 송상(松商), 경상(京商), 만상(灣商), 류상(柳商), 안주(安州) 상인들이었다. 대청 무역의 성행과 함께 청국으로 통하는 열로(沿路)에 위치한 주요한 도시를 주개성, 평양, 안주, 의주 등은 국내의 주요 상업 도시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도시로서도 이름이 더욱 높아 갔던 것이다. 본 항목에서는 이 밖에도 송도 홍삼(紅蔘)의 대외 무역과 관련한 자료들을 적지 않게 수록하였다.

다음으로는 대외 무역의 다른 하나의 부문인 대일 무역—왜관 개시(倭館開市)와 관련한 자료들도 수록하였다. 본래 왜상(倭商)들은 동래(東萊)의 왜관 개시를 통하여 우리 나라 상인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당화(唐貨)를 매입하였으며 그 대가로는 왜은(倭銀)을 지불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다량의 왜은이 우리 나라에 수입되었으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상인들은 청상(淸商)들과 왜상(倭商)들의 중간에서 서로 국제 중재 상인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一八 세기 중엽 왜상들이 청상들과의 직접적 무역을 시작할 이후로는 왜은의 류입이 적감되고 이것이 우리 나라의 대청 무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었는바 이와 관련한 자료들이 대일 무역 또는 대청 무역에 관한 자료들의 하나로서 수록되었다.

행전(行錢)에 관한 자료에서는 수십 년에 걸친 개성과 양서(兩西)에서의 행전의 시험적 단계

를 거쳐 一六七八年(숙종 四年) 이래 계속적으로 발행을 보게 된 주조 화폐(鑄造貨幣)——상청동보(常平通寶)에 관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국산동(國產銅)의 부족으로 인하여 항상 값 비싼 왜동(倭銅)을 구입하여 그것으로 동전(銅錢)을 주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른 한편 봉전 국가는 악전(惡錢)을 주조 발행함으로써 다액의 『주전의리(鑄錢之利)』를 점유하였다. 화폐 주조를 통한 인민 재산의 대규모적 수탈은 리조 시기의 봉전 국가가 인민들을 수탈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요한 방법의 하나이었다. 화폐의 유통과 함께 고려대는 봉전에서 비하여 훨씬 성행하였으며 이것이 또한 농민들의 땅타을 추진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되었다.

이리하여 주조 화폐의 광범한 유통은 서울과 지방 도시들에서 수공업과 상업의 발전에 미증유의 활기를 띠게 하면서 봉전적——농업 조합적 상업 조직과 수공업 조직의 붕괴를 촉진시켰고 농촌에서는 농민들의 계급 분화와 토지의 상품화 과정의 단서를 열어 놓았다.

제 4항 조세 관계에 관한 자료에서는 전세 작전(田稅作錢) 음(邑)의 점차적 증가 및 세미 방납(防納)의 보급으로 인하여 조창(漕倉), 조운(漕運), 세계에서 발생한 계 변화에 관한 자료들을 주요하게 수록하였다. 균역법(均役法) 양역(良役) 결전(結錢)에 관한 자료에서는 一五三七년(중종 三二年)에 실시한 첨군수포(從軍收布)법이 一七五〇年(영조 二六年)의 균역법——결전제(結錢制)의 실시를 계기로 군포(軍布)의 일부가 지세(地稅)화하는 동시에 화폐납으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들에 관한 자료들이 수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군포분까지 자주 화폐로써 징수되었는바 이는 우리 나라 봉전 시기 농민들의 가장 무서운 부담의 하나이던 양역이 직접적인 납액으로 바뀌어 군포——현물납으로, 현물납으로부터 다시 화폐납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과도 형태였다. 황기첨

정, 백골정포(黃口簽丁, 白骨徵布) 등 악명 높은 군포 수탈이 농민들의 생활을 파타령락시킨 제반 실태들도 수록하였다.

규역법 실시와 관련한 긴 자료들에서는 이 밖에도 각 도 각 읍의 호구 형태, 농민들의 생활 형태, 각 도 각 읍의 신분·계급 구성에 관한 적지 않은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동법에 관해서는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봉건 시기의 공물이 잡다한 현물 형태로부터 그것이 지세화하여 단일한 현물—디목으로 전화하는 역사적 필연성을 보여 주는 제반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대동법의 실시와 함께 출현한 각 계 공인들의 공물 조달을 위한 제반 활동은 이 시기 우리 나라 수공업과 상업의 인정한 발전 수준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 그들의 활동은 이 시기 수공업과 상업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아직도 남아 있던 몇몇 토공의 형태마저 시일의 정파와 함께 거의 전부 정작공(京作貢)됨으로써 공인들의 부는 더욱 축적되었고 그들에 의한 조세의 방납과 광범한 공물 청부가 실현되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자료들도 본 항목에 수록하였다.

환자 제도(還上制度)에 관해서는 자료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수록할 수밖에 없었다. 리조 후반기의 봉건 국가는 환창 모미(還創耗米)의 수탈을 통하여 국가의 재정 지출과 군비 지출의 주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던 만큼 환창목에 관한 문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고 따라서 이에 관한 기록은 一八세기 후반기 『리조 실록』과 『일성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기사들을 빠짐 없이 소개할 수는 없었고(또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본 자료집에서는 목차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립본전환(立本錢還)과 나이·번질(那移·反作) 등 지방 관리들의

모터 행동으로 인하여 화폐 경제가 발전하여 간제 행정과 농민들의 회생을 대가로 하여 화폐 재산이 이들 판료들의 수중에 축적된 제과정에 관한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수록하는 데 그치었다. 농민들을 강도적으로 수탈함으로써 그들의 형락을 촉진시킨 원인의 하나가 봉건 판료들에 의한 모미(耗米) 수탈이었던 사정을 말해 주는 전형적인 사례들도 아울러 소개하였다.

제 5항 신분 계급 관계에서 발생한 제 변화에서는 一七—一八 세기에 걸쳐 봉건 사회에서 발생한 경제적 변화와 관련하여 신분 계급 향상 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변화들과 형제(刑制) 및 일민들의 생활 풍습에서 발생한 변화들에 관한 약간의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신분으로서의 노비 제도의 해체의 필연성에 관한 자료가 이 부문 항목의 중심 내용으로 되었다. 항목 분류와 관련된 몇 가지 점에 관하여 부언하려 한다. 편자는 본 자료집을 편집함에 있어서 주어진 자료 내용에 근거하여 목차에 보이는 따사 같이 5개의 큰 항목을 설정하여 이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말할 것도 없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리조 후반기 화폐 유통의 내용과 그 규모를 파악하려 할 때 편자가 설정한 행전(行錢)에 관한 자료만을 가지고는 겨우 그 일면 즉 상평통보가 어떠한 경과를 밟아서 주조 발행되게 되었으며 때 시기 얼마만한 양의 상평통보가 어떤 방법으로 주조되었는가 하는 화폐 주조사와 관련한 일면적인 자료 밖에는 발견될 수 없다. 리조 후반기 화폐 유통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만기요람』 재용편 三에 수록되어 있는 호조 공물(戶曹貢物)조, 공가분수마련식(貢價分數磨鍊式)조, 균역—결전조, 대동 작공(大同作貢)조 등등을 참조하여야 하며 전세 작전(田稅作錢), 대동 작전(大同作錢), 군포 대전(軍布代錢) 령본전환(立本錢還) 기타 본 자료집의 거의 모든 항목에 걸쳐 그 어느 것도 화폐 유통의 보급과 관련이 없는 것이 없다.

수공업에 관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一七—一八 세기 수공업의 발전과 관련된 자료는 수공업(手工業)의 발전에 관한 자료 이외에도 시전(市廛)에 관한 자료 기타 대청, 대일 무역에 관한 자료 『만기요람』 재용편 二, 호조 공물(戶部貢物) 조 등등을 주요하게 참조할 필요가 있다. 시전에 관한 자료 역시 동일하다. 시전에 관해서는 시전에 관한 자료 이외에도 『만기요람』 재용편 三 호조 공물조 기타 여러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시대는 그 밖에도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리용하기를 바란다.

◎ 본 자료집에 있어서는 삼일성 종합 대하 도서관 소장 태백산본(太白山本) 『리조 실록(李朝實錄)』 영인본과 『정조 일성록(正祖日省錄)』 초록본과 『비변사등록(備邊司廳錄)』 초록본 및 『만기요람(萬機要覽)』 등을 대본으로 하였다.

◎ 『리조 실록』에 있었서는 一六五〇년(효종 원년)부터 一八〇〇년(정조 二四년)까지의 관제 자료물계통적으로 반휘할 수 있었으나 『일성록』, 『비변사등록』에 이르러서는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현존하는 조목 필사본에 의거하게 됨으로써 자료의 전모를 전해 주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 『만기요람』은 리조 후반기의 주요한 경제·사변들과 제현상들에 대하여 간명하고 포괄적인 설명을 주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만기요람』에 수록된 해당 부문에 관한 종합적인 설명은 이물 조여 항목 서두에 첨부하여 개괄적인 지식을 주기로 하였다.

◎ 전기 문헌들 이외에 식량·자원의 저서를 위시하여 제반 문집과 읍지, 지리서 등의 자료는 금번 발간하는 자료집에서는 분량상 이를 할애하고 다음 자료집에 수록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 자료 편찬 요강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소 수정됨과 관련하여 환곡(還穀), 궁방전(宮房田)

등기라 몇개 항목들에서는 『영조 실록』에 관한 자료들과 『숙종 실록』의 일부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록되지 못하였음을 부언하여 논다.

◎ 퇴도록 오자(誤字)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실록』에 나타난 오자들로서 전후 관계를 미루어 보다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교정하였다.

一九六〇년 五月

과학원 역사 연구소

고대 및 중세사 연구실

목 차

서 문

一、산업(産業)

- 1、수공업(手工業) (一)
- 2、광산업(鑛山業) (六)
- 3、어업(漁業)、염업(鹽業)、선업(船業) (八)

二、농업(農業)

- 1、토지 소유 관계(土地所有關係)——전제(田制)、
궁방전(宮房田)、아문 둔전(衙門屯田) (一四)
- 2、관개 시설(灌溉施設)、농업 기술(農業技術) (二〇)

三、상품(商品)——화폐 관계(貨幣關係)

- 1、국내 상업(國內商業) (三九)

1. 시전 제도(市廛制度).....	(二九)
2. 사상(私商)들의 경제적 지반 확대.....	(三二)
3. 경주인(京主人)、영주인(營主人).....	(三六)
4. 향시(鄕市).....	(三八)
5. 삼상(蔘商).....	(三九)
6. 기타(其他).....	(四一)
7. 대외 무역(對外貿易).....	(四二)
8. 대청 무역(對淸貿易).....	(四三)
9. 대일 무역(對日貿易).....	(四五)
10. 행전(行錢)과 고리대(高利貸).....	(五四)

四、조세 관계(租稅關係)

1. 수세(收稅)、조운(漕運).....	(五九)
2. 균역법(均役法).....	(六四)
3. 대동법(大同法)과 각계 공인(各界貢人).....	(八一)
4. 환자 제도(還上制度).....	(九〇)

五、신분 계급 관계(身分階級關係)

1. 노비 관계(奴婢關係).....	(一〇四)
2. 기타(其他).....	(一〇五)

一、 산업 (産業)

1. 수공업 (手工業)

方物各種措備……席子。

龍紋藤席每張價木十八疋。彩花席每張價木三疋半。黃花席每張價木二疋半。滿花席每張價木二疋半。滿花方席每張價木二疋半。並卜定於龍宮等八邑。直納長興庫。看品封裝。而其價以戶曹所納射軍木

十同會減。不足之數以田稅作木中除給。

萬機要覽財用編五

方物

方物各種措備……銀香盒。

一、事重十七兩五錢，以戶曹銀工曹造作進排。

大燭臺一、價銀錢四十二兩，工曹造作進排。

畫龍燭一、價銀錢二十六兩，工曹造作進排。

螺鈿梳匣、一、價銀錢

十六兩，工曹造作進排。

黃毛筆、每柄價銀錢二錢，工曹造作進排。

萬機要覽財用編五

方物

方物各種措備……油煤墨。

每丁價米一斗，卜定於海西。納于戶曹。

萬機要覽財用編五

方物

方物各種措備……苧布。

每疋價下地木八疋，黃染價錢三兩八錢，紅染價錢三十四兩八錢，戶曹給價於該庫，濟用監勾管進排。

萬機要覽財用編五

方物

方物各種措備……白紙。

卜定於三南，直納戶曹，而價本以會付穀倉減。

萬機要覽財用編五

方物

方物各種措備。○綿紬。

每疋價下地木八疋，黃染價錢四兩，紫染價錢十九兩，戶曹給價於該庫，而濟用監勾管進排。

○各色綿紬，前以白絲質來織造矣。正宗乙卯，以我國絲所織綿紬精擇封裝事，戶曹判書李時秀陳寔定式。

萬機要覽財用編五

方物

歲幣各種……好腰刀十柄。

統營七柄，全羅兵營三柄，卜定。

萬機要覽財用編五

歲幣

產業 (手工業)

萬機要覽財用編五

歲幣

歲幣

歲幣

歲幣

歲幣

歲幣

歲幣

歲幣

歲幣

歲幣

歲幣

歲幣

歲幣

歲幣

歲幣

歲幣

歲幣各種……五爪龍紋席二張・彩花席二十張、

嶺南卜定、○龍紋席每張價木十八疋、彩花席每張價木三疋十七尺五寸、戶曹上納中除給、直納長興庫、會錄取用、

萬機要覽財用編五 歲幣

歲幣各種、……好小紙三千卷、

一千五百卷、整水牛角代、○嶺南一千一百三十三卷、湖南一千一百三十二卷、湖西八百十五卷分定、每卷價米八斗五升、自惠賜給價于紙契、○補三十卷、○餘五十卷、會錄戶曹、

○每卷重二斤二兩、每張長二尺二寸二分、廣一尺六寸五分、

萬機要覽財用編五 歲幣

歲幣各種、○好大紙二千卷、

一千卷、整水牛角代、○嶺・湖南各一千二十卷分定、每卷價米一石、自惠賜給價于紙契、○補十卷、○餘三十卷、會錄戶曹、○每卷重三斤十四兩、每張長二尺四寸二分、廣一尺七寸、

萬機要覽財用編五 歲幣

蘆田只在海西、

黃州・安岳・鳳山等邑、蘆田極饒沃、饑饉之屬利用於一國、而戶曹納稅極零星、皆爲官房、官家扩受、以致富饒、

萬機要覽財用編二 稅稅

全羅・慶尙南道有匠稅、每名稅木一疋

以錢代納、則二兩三錢。全羅道四同三十三疋零、慶尙道三十四疋 ○鑄鐵匠・鎔鐵匠・水鐵匠稅、納

于戶曹。甕店匠工曹收稅。萬機要覽財用編二 匠稅

尙衣院啓曰、本院每年所織四色大段十二匹、則時未始役、而即今、中宮冊禮及世子冠禮冊禮時、翟衣・龍袍所用、則係是法服之不可闕者。至於嘉禮時所用錦段、亦當依膳錄、次第織造矣。從前、市上頗無買得之處、不得已織造以用。而今有停罷之教。此皆大禮所用、敢此仰稟。答曰、外人或疑內閣私令本院織造。誠極驚駭。豈可家喻而戶曉乎。尙方之官、皆是外人。而何漠然不知、若是之甚乎。此則非予所知。議于都監、處之。都監以爲、大禮以近、法服織造之舉、決難停罷。從之。 孝宗實錄卷七 孝宗二年

(一六五一年)八月丙午朔己酉

備邊司啓曰、曾因前主簿朴山男上疏、令全南兵使、先造龜車二輛、試其可用矣。即接兵使具仁璽馳報、使山男監造龜車。則始役三朝、葦造一輛、而以七十人夫、始得運用。碍於丘壠、沒於泥濘十里之地、終日

不能至。龜車之不合戰用、據此可知。請令速罷。從之。（孝宗實錄卷八孝宗三年（一六五二年）正月癸酉朔丙子）

上御書講。……時昉（李時昉）曰、南漢城防守之策、莫如火砲。故臣已辦得三百大砲。分授守利。

請以軍器寺火藥、優數移置。許之。（孝宗實錄卷九孝宗三年（一六五二年）九月庚午朔戊子）

尙衣院抄定諸般匠手以啓。各邑奴婢之移屬於尙方者甚多。命減其數。（孝宗實錄卷九孝宗三年（一六五二年）十一月己巳朔癸酉）

兵曹判書朴達上疏曰。……其五言、頃因柳廷益建白、以南邊戰缸所藏銅砲改備事、既已分付。而竊聞功役頗多、一時改造、其勢誠難。且銅砲之設、其來已久。雖有破裂之弊、此皆任事之臣、不能致勤、而然也。今若盡棄舊砲、改以孰銅、則不但民弊不貲、所易之熟砲、亦難一一精造。不若仍舊、而雖或改備、稍待年豐、隨力隨造。或令統營精造分給、則是亦一道也。答曰、所陳諸務、實非尋常緩急之計。予甚嘉悅。當令廟堂議處。備局回啓曰、南方邊將糧饌、皆出於水軍。議者言之久矣。湖西則自設大同法、已有此論。請令該處酌定。邊將月廩、各減本邑之米。兩南邊將朔料、姑以統營穀及各官元穀耗數、參半計給。更觀事勢、各浦・鎮・堡量其大小、給與糶糴之粟、以爲存本用耗之地。水陸軍換定之舉、自前已有此議、而水軍、則世傳其任、自是法典。故以此爲難。今若只從附近、分屬舟師、而不爲世傳、則依此施行、似爲便益。流移不定居之民、日益增多、而軍需漸虛。誠能各出米布、以分良民之偏苦、則其於國計、豈少補哉。請令兵曹詳講節目、分付諸道、軍役逃避者其田十許令放賣、以應其役。還集之後、徵其價而還其田土、亦有法例。疏中之意、與此相符、請依此施行。減其番布、開諭還集等事、亦宜舉行。舊砲改造事、姑令停止、以待秋成、更議處之。下教曰、熟銅砲難辦、則雖代以鐵砲、不可停務。況其銅砲變賣、則足以充其措備之物力。以此量處宜當。原疏中、逃軍既集之後、又減本年身役、容其復業之說、亦似有見。依此施行。備局即詢。匠手以爲、鐵砲不便於用、請以舊銅